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9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 • 소병훈

김영환 · 서미화 · 복기왕

윤종군 · 김남희 · 김교흥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 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함 (안 제2조제2항).
- 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 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 다.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 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마. 계엄의 선포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없

- 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항삭제).
- 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 조치권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거쳐야"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조와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

론·출판·집회·결사"를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 ·집회·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	② 전시ㆍ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		
<u>상사태</u> 시 적과 교전(交戰) 상			
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			
(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의 심의를 <u>거쳐야</u> 한다. <u><단서</u>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		
<u>신설></u>	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u>로 의결하여야 다만,</u>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u><삭 제></u>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			
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 |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

- ⑥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 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에 대 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 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 조와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 이 없다.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언론・출판・집회・결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 (2) -----

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단</u> <u>서 신설></u>

-----다만,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

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

<u>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